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916
----------	-------

발의연월일 : 2025. 12. 4.

발 의 자 : 김정재 · 박충권 · 박덕흠
조지연 · 강명구 · 김미애
서일준 · 이달희 · 박대출
김승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군을 육군 · 해군 · 공군으로 조직하고, 해군 예하에 해병대를 두도록 하면서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 ·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병대는 창설 이래 상륙작전 · 도서방위 및 특수작전을 주된 임무로 하면서 독자적인 작전 교리와 조직문화를 발전시켜왔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에 소속되어 지휘 체계 및 인사 운영 등에서 독립성을 제약받아오고 있음. 최근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와 도서 · 해양 방위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으로 편성하여 육군 · 해군 · 공군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할 필요가 있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해병대를 해군 소속이 아닌 독립된 군종의 하나로 분리하고, 각군 참모총장에 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하도록 하여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4군 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제3조제2항,

제8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4921호), 「군무원인사법」(의안번호 제14918호), 「군수품관리법」(의안번호 제14923호), 「군인사법」(의안번호 제14919호), 「사관학교 설치법」(의안번호 제14920호) 및 「예비군법」(의안번호 제149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를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이하 “각군”이라 한다)로 조직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도서방위 및 특수작전”으로 한다.

제8조 중 “각군 참모총장”을 “각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공군참모총장”을 “공군참모총장, 해병대에 해병대사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3명”을 “4명”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장의 제목 중 “공군”을 “공군·해병대”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공군본부”를 “공군본부(이하 “각군본부”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각군”을 “육군·해군·공군”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국군의 조직) ①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제2조(국군의 조직) ① -----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이하 “각군”이라 한다)로 조직한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조(각군의 주임무 등) ① (생 략)	제3조(각군의 주임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u>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 · 훈련을 한다.</u>	② ----- ----- <u>해병대는 상륙작전 · 도서방위 및 특수작전</u> ----- -----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국방부장관의 권한)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합동참모의장과 <u>각군 참모총장</u> 을 지휘 · 감독한다.	제8조(국방부장관의 권한) ----- ----- ----- ----- <u>각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u> -----.
제10조(각군 참모총장의 권한 등)	제10조(각군 참모총장의 권한 등)
① 육군에 육군참모총장, 해군에 해군참모총장, 공군에 <u>공군참모총장</u> 을 둔다.	① ----- ----- <u>공군참모총장, 해병대에 해병대사령관</u> -----.

② (생략) ③ <u>해병대에 해병대사령관을 두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감독한다.</u>	② (현행과 같음) <u><삭제></u>
제12조(합동참모본부) ①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 외에 소속 군이 다른 <u>3명</u> 이내의 합동참모차장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둔다.	제12조(합동참모본부) ① ----- ----- -----<u>4명</u>----- ----- -----.
②·③ (생략) 제13조(합동참모회의) ① (생략) ② 합동참모회의는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으로 구성하며, 합동참모의장이 그 의장이 된다. <u>다만, 해병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병대사령관도 구성원으로 한다.</u>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합동참모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단서 삭제></u>
③·④ (생략) 제4장 육군·해군·<u>공군</u>	③·④ (현행과 같음) 제4장 육군·해군·<u>공군</u>·<u>해병대</u>
제14조(각군본부 등의 설치 등) ① 육군에 육군본부, 해군에 해군본부, 공군에 <u>공군본부</u>를 두고, 해병대에 해병대사령부를	제14조(각군본부 등의 설치 등) ① ----- -----<u>공군본부(이하 “각군본부”라 한다)</u>-----

둔다. ② (생 략) ③ <u>각군</u> 참모차장은 해당 군 참모총장을, 해병대부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을 각각 보좌하며, 해당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⑤ (생 략) 제15조(각군 부대와 기관의 설치) ①·② (생 략) ③ <u>제2항 단서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에게 권한을 재위임할 수 있다.</u>	---. ② (현행과 같음) ③ <u>육군·해군·공군</u>----- ----- ----- -----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15조(각군 부대와 기관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u><삭 제></u>
---	---